

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

문서번호	BSKS-3-1-34
제정일자	2012.02.29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12.02.29. 제정 2019.07.16. 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제반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.) 와 기타 특별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.)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07.16.>
- 제2조(적용범위) 수당의 지급 범위는 회의에 참석하는 부산경상대학교 교직원, 학교법인 화신학원 임,직원과 학교법인 화신학원 산하 각종 학교의 교직원(이하 "내부 위원"이라 한다) 및 기타 외부 인사(이하 "외부 위원"이라 한다.)로 하되, 내부 위원의 수당 지급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이후에 개최한 회의에 한하여 적용한다.(사전에 회의시작시각을 명시한 결재서류 첨부)
- 제3조(지급범위)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당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.
- 제4조(수당의 1회 지급한도액) 개인별 수당의 1회 지급한도액은 내부 위원은 5만원, 외부 위원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(단,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지급 한도액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)
- **제5조(수당의 연간 지급 횟수 제한)** 수당 지급은 1년 동안 개최되는 회의에 적용하며 내부 위원은 개최되는 회의의 개최 횟수에 관계없이 홀수차 회의만 수당을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



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

문서번호	BSKS-3-1-34
제정일자	2012.02.29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